

2025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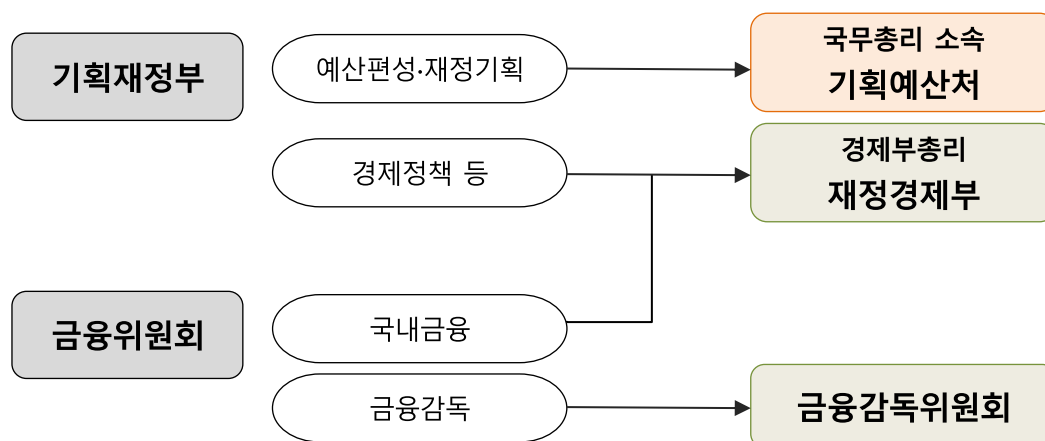
이재명 정부의 경제·금융 분야 정부조직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

최근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공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정부는 2025. 9. 7.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논의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고, 그 방안에는 현행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금융부처 및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과 예산편성, 세제, 국고(결산 포함), 외환·국제금융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경제정책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온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부처가 되고,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세제, 국고, 공공기관 운영 등 기존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상당 부분 수행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까지 이관 받아 국내·국제 금융정책 기능을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되는 장관급 부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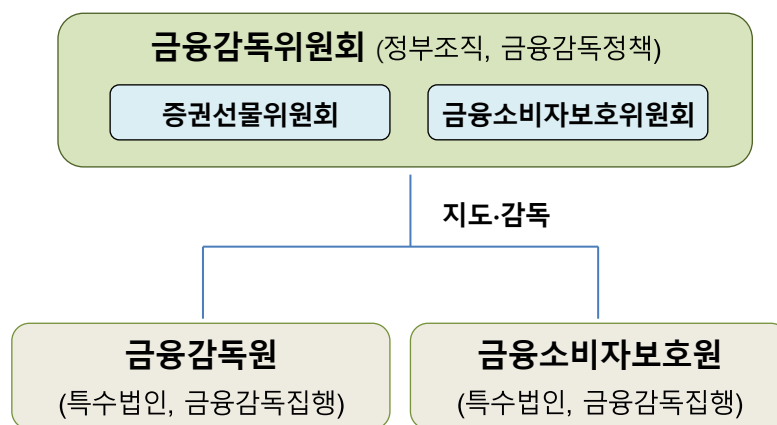
<(그림) 이재명 정부의 경제·금융 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



한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포함)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정부부처로서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에 현 ‘증권선물위원회’ 외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금융감독 집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분리·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금융감독원’으로 분리되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집행 기능이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도 함께 개편될 전망입니다.

<(그림)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 시행 시 변화되는 금융감독체계 >



이번 경제·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의 특징

이번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두고, 과거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체계와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당시, 한국의 금융행정 체계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재정경제부가 경제부총리 부처로서 국내·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금융감독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금융감독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였으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번 방안 역시 금융정책(재정경제부)과 금융감독 정책(금융감독위원회)을 분리하고, 금융감독 집행 기능은 특수법인을 통해 수행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은 아래 3가지 측면에서 과거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부조직이 아닌 **금융감독 집행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과거에는 금융감독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과 금융감독 집행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겸임하는 구조였으나, 향후 **정부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수장(금융감독위원장)과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의 수장(금융감독원장)은 별도로 지명**됩니다.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감독 집행기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금융감독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재정경제부에서 소관하게 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금융감독 집행기구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금융감독 집행기구의 권한 남용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은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지도·감독 하에 금융감독 전반에 대한 집행 업무를 전담하였습니다. 이번 개편 방안에 따르면, 금융감독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업무 전담조직인 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될 예정입니다. 그간 학계에서는 영국의 건전성감독청(PRA)·금융행위감독청(FCA) 및 호주의 건전성감독청(APRA)·증권투자위원회(ASIC) 등의 해외 사례를 들어 소위 “쌍봉형 감독체계(Twin-peaks supervision model)”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금융감독 집행기구가 나누어질** 예정입니다.

셋째,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두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라는 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구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감독·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관한 전심(前審) 기능 등을 전문성 있게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에 상응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사무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특화된 사전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합의제 행정기구이자 동시에 금융감독 집행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과 함께 유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능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논의 전망

정부는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금융정책 기능의 재정경제부 이관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경제·금융 분야 정부조직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정부조직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2026. 1. 2.자로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부조직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해서는 국회 등의 논의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국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전담하여 소관하는 금융감독 정책 기능의 구분**입니다. 현행 법률상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명시되어 있는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2008년 이전에는 금융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개정, 유권

해석 등은 금융정책의 영역으로 보아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였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시하는 감독 규정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LTV·DTI·DSR 등의 규제를 가계부채·부동산 등 시장 대책에 활용하게 될 때 그러한 대책 마련이 금융정책에 관한 사항인지, 아니면 금융감독에 관한 사항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핀테크 등에 대한 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서는 현행 법령상의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특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인지 개별·구체적인 사안에서 인허가를 발급하는 권한을 갖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사항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 비해 금융시장과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고 금융 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가상자산 등 복잡·다양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금융감독 집행기구로서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금융감독원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구분될 것인지** 또한 논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국·호주 등 해외의 쌍봉형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감독 기능으로서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감독(Prudential regulation)과 영업행위 감독(Financial conduct regulation)을 각각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신설하는 경우, 현행 금융관련법령상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에 대한 규제와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지가 우선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감독이나 공시·불공정거래조사 등 자본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로 보아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 영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의 문제로서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에 관한 정부부처와 집행기관까지 최대 4개로 나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중복규제 가능성 또는 권한·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의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함께 수행하고 있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2개의 정부부처에 나누어 소관하도록 하는 것은 정책(엑셀레이터)와 감독(브레이크) 간의 상호 견제라는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으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사태 등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 4개의 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대폭 증가하는 등 중복 규제의 가능성과 혼란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정부 브리핑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중복되지 않게 설정하되, 필요한 경우 기관간 MOU를 통해 업무를 구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금융정책·감독 및 집행에 관한 유기적 연계와 중복규제 가능성 방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의 경제·금융 분야 조직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계 법령을 전**

반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등에서의 논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가 장기간이어질 경우, 현재 금융당국(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지는 인·허가, 검사·제재 등 개별적 업무가 어떠한 방향으로 수행 될지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도 적시에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사무실도 향후 입법 동향을 비롯해 경제·금융 분야 정부조직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법률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Authors

이상환

02-3703-1074
shlee@kimchang.com

허영만

02-3703-1128
ymhuh@kimchang.com

박찬문

02-3703-1183
cmpark@kimchang.com

이한진

02-3703-8384
hanjin.lee@kimchang.com

김민석

02-3703-4700
minsuk.kim@kimchang.com